

2026 PP평가 기준 세부사항

□ 편성 항목 관련

○ 복수 채널 동시 편성 방송물 F/W 인정여부

- (원칙)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최초방송(F/W) 평가항목의 취지 및 유료방송의 성격(다채널)을 고려해, 특정 방송물을 복수 채널에 동시 편성하더라도 1개 채널만 F/W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아래의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복수 채널을 F/W로 인정함

① (공동제작) 10% 이상 투자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최초 공개 연도 내에 편성된 경우, 동시 편성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 투자 총액의 10% 이상 투자한 모든 PP사에 1회씩 F/W 인정함

예) A, B, C사의 26년 2월 프로그램 공동제작/ A사 26년 8월 편성, B사 26년 12월 편성, C사 27년 5월 편성 / 자본투자 총액 비율 : A사 50%, B사 30%, C사 20%

= 26년 평가 시, A, B사는 26년 평가 대상기간('26.1.1~'26.12.31) 내에 공동제작 프로그램 편성으로 최초 방송 인정 (C사는 '26년 미편성으로 평가대상이 아님)

= 26년 평가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26년 평가연도에 최초 방송으로 처리됨에 따라 C사는 최초 방송 인정 불가

- * RFP 편성시트 비고란에 공동제작사(투자비율) 입력 필수, 계약상 비밀일 경우 자사 10% 이상 투자 여부 확인 가능한 선에서 작성
- * 공동제작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최초 제작'하는 경우만 인정함. 기존 소스를 활용한 재제작(더빙 등)은 공동제작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공동제작은 상이한 법인간 진행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법인 소속 1개 채널에, 각 1회에 한해 F/W로 인정함

② (공동구매, 동시편성) 제작비를 투자하지 않은 F/W 방송물을 상이한 복수 법인(개별PP)이 공동 구매하여 복수 채널에서 동시 편성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초방송으로 인정함

법인이 다른 복수의 개별PP(대표가 같거나 다른 경우 모두 포함)가 공동 구매하는 콘텐츠는 일정 기준 이상(콘텐츠구매비 1억원 이상, 투자비율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초방송으로 인정

예) 법인이 다른 4개 개별 PP사의 콘텐츠 구매비 1억원 -> 2,500만원씩 투자 시 4개 사 모두 최초방송으로 인정

※ 유료방송사는 상이한 법인간 실질적인 공동제작(구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공동제작(구매)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화 장르군 F/W 인정 관련 예외 조항

- (원칙)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라 유료방송에 송출되는 전체 채널 중에서 최초로 방송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만을 인정
: 다만 영화 장르군의 경우, 유료채널 선방영 후 일반채널 최초 방영 시 유료 채널 홀드백 관련 계약 관련 조항이 있을 때만 예외로 F/W 인정

※ 관련 계약서 조항 증빙 시 인정 가능

: 관련 근거_방미통위 「25년 채널평가 이의제기 관련 자문 결과」 (26.04.16)

○ 기존 방송물을 재활용한 방송물(재편집물) F/W 인정여부

- (원칙) 방미통위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세부 적용기준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최초로 방송된 방송 프로그램 여부를 판단”함

☞ 기존 방송물을 재활용한 경우, 인력 또는 자본의 추가 투자 등 재 제작 과정을 거쳐 원 방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F/W로 인정함

- (동일성 판단기준 예시)

구분	설명	F/W 여부
스포츠	① 기 방송된 여러 스포츠 경기의 주요장면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 기존 방송물의 단순한 클립 모음(잘라 붙이기) 형태인 경우 * (예) 특정 축구선수의 골 모음 100선	X
	② 기 방송된 여러 스포츠 경기의 주요장면을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재제작 과정*을 거친 경우 * (예) 패널 출연, 해설 추가 등	O
오디션 프로그램	④ 기 방송된 여러 회차의 주요장면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 기존 방송물의 단순한 클립 모음(잘라 붙이기) 형태 * (예) 특정 지원자의 예선부터 결승까지 무대 모음	X
	⑤ 기 방송된 여러 회차의 주요장면을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재제작 과정*을 거친 경우 * (예) 패널 출연, 해설 추가 등	O
영화/드라마/예능 등	⑥ 특정 콘텐츠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O
	⑦ 영화/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단, 별도의 재제작*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함) * (예) 패널 출연, 줄거리를 설명하는 나레이션 추가 등	O
	⑧ 더빙으로 기방영되었던 콘텐츠에 한글 자막을 달아 방영하는 프로그램	X
더빙/자막물	⑨ 한국어 더빙이 없는 기방영된 콘텐츠(외국어물, 한글자막)를 한국어로 최초 더빙할 경우	O
	⑩ 더빙으로 인해 장르가 변화(영화→유머.패러디)하는 등 방송물의 성격이 바뀔 경우	O
	⑪ 상당한 수준의 더빙 대본 수정 및 성우 변경 등을 통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O
	⑫ 기방영된 한글 더빙물을 일부 성우변경 등 동일한 내용으로 더빙할 경우	X

	⑬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조악하게 더빙(자막)하여 부자연스러우며, 객관적으로 방송물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프로그램	X
화질 개선 등	⑭ 기방영된 저화질 콘텐츠를 고화질로 단순 업스케일한 프로그램	X
	⑮ 기방영된 저화질 콘텐츠를 고화질로 업스케일하고, 추가 촬영 또는 상기 ②, ⑤, ⑥, ⑦, ⑨, ⑩, ⑪ 등 기방영된 콘텐츠와 동일하지 않은 콘텐츠로 불만한 수준의 재제작을 거친 프로그램	O

* 상기 예시 외에도 (원칙)에 근거해 F/W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판단이 어려운 “인력 또는 자본의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 사전 문의

- (단순편집물) 기존 방송내용을 재활용한 프로그램 중 재편집물* 기준(p2~3)에 해당하지 않는 방송프로그램으로, F/W로 인정하지 않음

· ex1. 별도의 인력/자본 투자 없이 편집으로 방송시간만 줄인 방송물 (90분 방송 → 60분)

· ex2. 여러 회차의 방송물을 편집으로 단순 짜깁기한(더빙, 패널출연 등 상당한 재제작 과정이 없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불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프로그램

- (단순편집물과 재편집물의 케이스 구분)

단순편집물	재편집물	상세
Y	Y	해당 없음 (입력불가, 오기재)
Y	N	단순 시간 축소 편집물, 짜깁기 하이라이트 등 (순환편성 반영)
N	Y	자본, 인력이 투자된 재제작물 (국내최초 인정)
N	N	초방, 해외수급물 등 최초방송프로그램

⇒ RFP 작성 시, 편성시트 오류체크열 확인 必

○ 최근 2년 이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인정 여부

- (제작일:연도 기준)

· 국내 제작물: 해당 회차의 편집 등의 후반작업이 완료되어 송출을 제외한 모든 방송 준비가 완료된 시점

· 해외 제작물: 상동. 단, 제작일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할 시, 유료방송사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① 해당 방송물 제작국가의 최초 방송연도

② ①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방송물 제작국가의 해당 방송물의 최초 수출승인(신고, 허가 포함)연도

- (영화: 최초 개봉(릴리즈) 기준)

· 회차가 존재하지 않고(단편), 길게는 수년간 제작이 이뤄지는 영화 특성을 고려해 국내외 최초 개봉(릴리즈)일자를 제작일로 판단함

- (재제작물 적용 기준)

- 기본적으로 재제작물은 '최근 2년 이내 제작' 미인정(「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상 채널당 연 1회 방송분만 인정)
- 기존 방송물을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재제작(재편집)하는 방송물*의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 방송물의 제작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ex) 80년도 드라마 해설(해설 추가) = 유료방송 최초(O), 최근2년 이내(x), 순환편성 해당하지 않음(초방)
- ex) 단순편집물(예: 스포츠 하이라이트) = 유료방송 최초(x), 최근2년 이내(x), 순환편성 해당(재방)
- * 해당년도에 원소스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이를 활용한 단순편집물(새로운 프로그램x)은 최근 2년 이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환편성으로 반영됨. 그 판단 기준은 동일성 판단 기준을 따름

□ 시청률 관련

○ 티어 보정 여부

- 사용하는 시청률(자체/조사기관)과 무관하게 전 유료방송사는 티어 보정을 적용함

○ 조사기관 시청률 번호대역별 보정 여부

<유료방송사 자체 시청점유율>

- 유료방송사 자체 시청점유율이 있는 경우 => 번호대역별 보정 적용

<조사기관 시청점유율>

- 조사기관으로부터 전국단위 시청점유율을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
=> 번호대역별 보정 적용하지 않음
- 조사기관으로부터 유료방송사별 시청점유율을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
=> 번호대역별 보정 적용

□ 제작역량 항목

- 26년도 방미통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미시행에 따라 전 채널은 '매우우수'로 제출하여야 함 (전 채널 6점으로 반영)

□ 투자비 항목

- (일반PP 이외 부문 투자비 제외) 재산상황공표집을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일반PP 방송 이외 분야(홈쇼핑, OTT, 라디오 등) 투자비를 모두 제외하고 제출해야 함
 - 유료방송사 요청 시 합리적인 투자비 산출(구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상파/중편/보도 계열PP) PP채널평가 대상이 아닌 채널의 투자비/매출은 모두 제외하고 제출해야 함
 - (MPP 등) 실시간 방송(PP채널)과 무관한 투자비/매출은 모두 제외하고 제출해야 함, ex) VOD 판매매출 등
 - 구분 가능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매출 발생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되, 비용과 매출을 합리적인 비율로 구분해야 함

□ PP 운영능력 항목

- (송출대행수수료, 전용회선 사용료 체납 검증) 송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PP의 경우 수수료(사용료) 월별 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여 유료방송사에 제출해야 함
 - 단,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 등은 삭제 후 제출
 - 이체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사실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자료 제출 必
- (방송사고 소명) 기본적으로 방송사고 소명 책임은 PP에 있음(유료방송사 귀책:송출 장애 등 제외). PP 귀책이 아닌 방송사고의 경우(송출대행사 귀책), 반드시 귀책 사업자의 사고 경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소명되지 않은 방송사고는 기본적으로 PP 귀책으로 봄
- (방송 내용 심의에 따른 처분, 편성비율 위반에 대한 처분) 띠광고(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된 광고)를 제외한 모든 방송 내용 심의 처분은 평가에 반영함.

□ 기타

- 연중 양수도 및 장르변경 채널
 - (평가기간) 해당연도 1.1 ~ 12.31간 방송한 채널은 ‘모두’ 평가 대상임
 - (양수도 전후 방송분 모두 평가) 양수도 채널도 평가기간 내 편성, 투자비

등 모든 평가항목을 반영함

- 양도법인으로부터 양도 전 평가기간에 대한 평가 관련 자료 협조 필수
- 양수 사업자는 평가기간(1월~12월)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되, 공적 자료(재산상황공표집) 부재 시에는 별도 자료로 증빙
- 평가기간 내 평가항목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 (연중 장르변경 반영 시점)

- 당해연도 평가기간 중 장르변경은 당해연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11월 말까지 플랫폼에 장르 변경을 요청하고 연내 합의 완료 시, 차기 연도 평가부터 변경된 장르로 평가 반영

※ 2027년도(2027.1.1. ~ 2027.12.31. 방송분) 채널평가에서 채널군을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은 2026년 11월까지 플랫폼에 장르 변경을 요청해야만 반영 가능함. 방미통위에서 26년 12월 중 채널군 제출 요청 예정

- (신생/신규 채널의 당해연도 평가 대상 포함 여부)

- 신생/신규 채널은 해당 유료방송사에 진입한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생) 전체 유료방송사에서 최초 방송, △(신규) 해당 유료방송사에서 최초 방송